

■ 대만·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 필름에
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[별표]

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(제3조 관련)

공급국	공급자	덤핑방지 관세율(%)
대만	1. 신콩(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., Ltd.)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5.49
	2. 그 밖의 공급자	5.49
태국	3. 에이제이피(A.J. Plast Public Company Limited)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.71
	4. 폴리플렉스[Polyplex(Thailand) Public Company Limited]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.19
	5. 그 밖의 공급자	3.68
아랍에미 리트연합	6. 플렉스(Flex Middle East FZE)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 출하는 자	7.98
	7. 제이비에프(JBF RAK LCC)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 하는 자	60.95
	8. 그 밖의 공급자	51.48

비고: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·제3호·제4호·제6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와 「관
세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2호·제5호 또는 제8호
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·제3호·제4호·제6호 또는
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.